

## 보상계획열람공고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310호(2016.10.06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445호 (2023.10.19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4-15호(2024.02.28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된 『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』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05월 10일

### 을지로95피에프브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성 은

#### 1. 사업개요

- 가. 사업명 :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
나.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95-12번지 일대, 2,186.4㎡  
다.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: 을지로95피에프브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성 은  
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91, 8층 씨8788호(중동, 씨티프라자)  
라. 사업의 규모 : 연면적 31,136.09㎡, 지하8층 ~ 지상21층, 높이 94M

#### 2. 보상대상 내역 : 보상대상은 공고일 현재 동의를 하지 소재지(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95-13, 95-14, 95-15, 95-16번지)의 영업권자로 세부목록은 보상계획열람장소에 비치 및 개별 우편발송을 하며, 공고기간 중 세부목록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3. 보상계획 열람 기간 및 장소

- 가. 열람기간 : 2024. 05. 10. ~ 2024. 05. 24. (15일간)  
나. 열람장소 : 1)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9길 24-5, 2층  
2) 중구청 도심정비과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로 17, 6층(예관동)(☎02-3396-5772)  
다. 열람방법 : 열람기간 중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.  
라. 이의신청 : 열람공고 기간 중 토지·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음으로 간주 합니다.

#### 4. 보상의 시기·방법 및 절차

- 가. 보상시기 : 보상평가 후 협의 결정(추후 개별 통보)  
나. 보상방법 : 보상가격은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3인(제2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및 영업권자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·도지사 또는 영업권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)을 선정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.  
다. 보상절차 : 보상계획열람·공고 → 감정평가 → 손실보상 협의 → 수용재결(협의 불성립시) →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
라. 감정평가업자 추천 : 시·도지사 및 영업권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, 감정평가업자를 추천 하려는 영업권자는 영업보상 대상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합니다.

#### 5. 기타사항 : 해당 영업권자에 개별 통지할 것이나,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 하며, 기타 문의사항은 상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